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619
----------	------

제출년월일 : 2015. 3. 3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

□ 주요내용

가. 소장품 구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의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위원 2명 이상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과 구입가격 결정

나. 소장품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나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 2할 이내의 기증사례비 지급

다. 예비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산시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되 평가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

라. 감정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관련 전문가로 하며,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등 평가

마.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바. 수장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제정 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 소장한 유·무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수장시설"이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소장품 수집

제3조(수집대상) ① 소장품 수집의 대상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구입·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구입)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의 사전평가와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

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밖에 소장품 확보의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품 구입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보존·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 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자료를 소장품으로 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유상 기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소장품 기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

제7조(예비평가위원) ① 예비평가위원은 안산시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되 평가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그 자격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감정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
2.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③ 예비평가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전평가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감정평가위원) ① 감정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 있는 사람

4. 국·공립 박물관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감정평가위원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 ③ 감정평가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감정평가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수당)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감정 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소장품 관리

제10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수장시설) ① 시장은 유·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품 대여 등)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감정평가위원이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산업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산업정책과장
	직위·성명	김동완
	담당·계장 직위·성명	산업정책계장 최미라
담당자 성명·전화		조수현 (행정 2850)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19
----------	------

제안년월일 : 2015년 4월 16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한 사전적 표현으로 수정함
-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위촉인원의 한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표현하고자 함
- 제4조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위촉인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였음
- 제7조의 관련 전문가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자격을 감정평가위원 자격에 준용함에 있어 명확한 용어 정리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등에 빌려주는 것”으로 수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을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 5명 이하”로 “감정평가위원 2명 이상”을 “감정평가위원 분야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수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을 “제8조제1항 각 호를”로 수정한다.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1.~4. 생략 5. “대여”란 소장품을 다른 기관 <u>등으로부터</u>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4. 생략 5. “대여”란 소장품을 다른 기관 <u>등에 빌려주</u> 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입)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의 사전평가와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 대상과 구입 가격을 결정한다.	제4조(구입) ① ----- -----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 5명 이하 ----- 감정평가위원 분야별 2명 이상 5명 이하 -----
제7조(예비평가위원) ① 예비평가위원은 안산시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되 평가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그 자격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예비평가위원) ① ----- -----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